

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5월 4일



1. 공고방법 :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
2.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내역
 - 상호명 : 비엔티기술주식회사
 - 대표자 : 서*호
 - 소재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1로1길 17-14 1동 301-3호 (산동읍)
 - 처분업종
 -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(등록번호 : 충남홍성 2020-10-02)
 - 위반내용 : 건설공사대장 미(지연)통보
 - 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
 - 위반내용(상세)
 - 2023년 #3 보일러설비 간이정비공사 (Backpass Tube Protector 설치)
 - 과태료 : 400,000원
 - 처분일자 : 2026년 5월 4일